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3
----------	-----

2025. 3. 21.(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재주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재주 의원)

가.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제27조 및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가. 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2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	-	-	-	-	-	-	-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0.03.16.	-	-	-	-	-	-	23.05.10.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 「스포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로,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으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 고취 및 스포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운영 규정으로,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 포함),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포상 규정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